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원격교육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개정 사항 반영 • (기존)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였으며, 분야도 한정(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되어있었음 • (개정)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음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제463호)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기대효과	-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 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1.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1부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4조(수업방법) ①본교의 수업은 필요에 따라 주간 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창업실습수업, 집중이수제, 학생자율수업 이동수업, 협동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개정 2020.2.28., 2023.8.30.) ②<삭제 2019.2.26.> <u>(항 신설)</u> ③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수업방법) ①좌동 ②좌동 ③<u>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을 따른다.(신설)</u> ④좌동 <u>(3항 신설에 따른 기존 항 이동)</u>
<u>(신설)</u>	<u>부 칙</u> <u>이 개정 학칙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12. 5.] [교육부훈령 제463호, 2023. 12. 5.,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칙 등 규정사항) 대학등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2.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
3.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
4. 원격교육지원센터
5.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
6.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해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제5조(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강의 평가) <삭 제>

제7조(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원격수업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할 수 있으며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 및 설비)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63호, 2023. 12. 5.>

이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